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9
----------	------

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

-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안 제1조 내지 제6조제15조제17조제20조)
- “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안 제7조제7항)

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4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

-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안 제17조의 3)

- 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안 제18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6.10.27~11.16)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종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동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각각 “고문”으로 한다.

제17조의3중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2·3항, 제15조, 제17조제2항·5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생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u>동사무소</u> 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 동-----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u>종로구청</u> <u>장</u>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u>동사무소</u> 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u> ----- ----- 동-----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u>동사무소</u>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 동----- -----.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u>동사무소</u> 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동-----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u>동장이 한다</u> .	제7조(운영) ① ----- ----- -----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u> .-----

현행	개정안
②~⑥ (생략) <u>〈신설〉</u> 제11조(이용) ①~③(생략)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회복을 위해 변상</u>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설치) <u>동사무소의</u>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u>동사무소에</u>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u>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u> ②동장은 당해 <u>동사무소의</u>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②~⑥ (현행과 같음)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①~③(현행과 같음) ④-----<u>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u>-----.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u>동</u>----- ----- -----<u>동</u>-----.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u>동</u>----- ----- -----<u>선정된 자</u>

현 행	개 정 안
중 봉사정신이 투철 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_____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u>추천하는 후보자</u>	1. _____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u>선출된 후보자</u>	_____ <u>추천하는 자</u>
③~④ (생략)	2. _____ <u>선정된 자</u>
⑤ <u>당연적이 아닌 고문</u> 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u>동사무소</u> 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⑤ <u>고문</u> _____
제17조의3(임기) <u>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_____ <u>동</u> _____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임기) <u>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 (생략) <u>〈신설〉</u>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문</u>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u>동사무소</u>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5.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문</u>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 (현행과 같음) <u>⑤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u> 제20조(해촉) ① <u>고문</u> _____ _____ _____ _____ 1. <u>동</u> _____ _____ 2.~5.(현행과 같음) ② _____ ----- <u>고문</u> ----- _____ _____